사규번호 P2-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규정

제정 2024. 8.16

[통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이사회)

제4조(이사회의 역할)

제2절(대표이사)

제5조(대표이사의 역할)

제3절(자율준수관리자)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제4절(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

제9조(CP주관부서)

제10조(CP 주관부서의 업무)

제5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제12조(자율준수협의회 업무)

제13조(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자율준수 실천 리더의 역할)

제14조(부서별 실시 책임자)

제6절 업무집행의 독립성 보장

제15조(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제7절 임직원

제16조(임직원의 의무)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절(자율준수의지 선언)

제17조(선언 목적)

제18조(선언 방법)

제2절(CP실시계획)

제19조(CP 실시계획)

제3절(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20조(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4절(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21조(자율준수편람)

제5절(교육 프로그램)

제22조(교육의 실시)

제23조(교육의 내용)

제24조(교육의 권리와 의무)

제6절(부서별 자율점검)

제7절(사전 검토・협의 제도)

제26조(사전 검토・협의 제도)

제8절(모니터링 제도)

제27조(CP 모니터링)

제28조(CP 모니터링 내용 및 실시 책임)

제9절(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제29조(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제10절(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30조(제재의 원칙)

제31조(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32조(제재의 절차)

제25조(부서별 자율점검)

제11절(CP 운영의 성과 평가 및 개선)

제33조(CP 의 효과성 평가)

제34조(CP의 개선)

제12절(문서관리)

제35조(문서관리 기본원칙)

제36조(관리대상 문서)

제13절(기타)

제37조(인센티브)

제38조(운영상황 공시)

제39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제40조(위임)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당사의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CP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국내 법령을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정부 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기준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 지휘 하에 CP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전·검토 협의"라 함은 거래 또는 계약체결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 등과 사전에 검토 또는 협의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8. "부서별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이라 함)은 부서별 CP 실시책임자가 해당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의 존재여부 및 CP의 적절한 운영여부를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부서별 CP 실시책임자"(이하 "실시 책임자"라고 함)는 공정거래 리스크가 있는 현업 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0. "CP 모니터링"이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모니터링 담당자가 회사 내 타 부서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 및 CP의 기준과 절차에 맞는 운용여부를 감독·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위험성을 식별(위험성과 위험성 요인을 파악)·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 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자 를 말한다.

13. "제재" 또는 "제재조치"라 함은 본 운영규정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이사회

제 4 조 이사회의 역할

① 이사회는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CP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과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③ 이사회는 CP의 운영상황에 대해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검토한다.

④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1. 이사회에의 직접 보고

2. 독립성

3. 적절한 권한 및 지위

4. CP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제공

제 2 절 대표이사

제 5 조 대표이사의 역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 준법지원인이 겸직한다.

③ 정기적으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면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4.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5.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상벌위원회 상정
7. 자율준수 관련 활동 및 사안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4 절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

제 9 조 CP 주관부서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 관리자 직속의 CP 주관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 10 조 CP 주관부서의 업무

CP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자율준수프로그램 계획의 작성,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실행

3.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운영 효과성 평가

4. 자율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각 부서의 자율준수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 등 지원활동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7.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주관

8.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9.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문서체계 구축

제 5 절 자율준수협의회

제 11 조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활동의 협의기구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이외에도 건설관련 법령 등 자율준수를 위하여 자율준수협의회를 준법협의회 등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자율준수 실천리더(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자율준수협의회의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부문별 1인으로 하고, 팀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준수 실천리더(담당자)는 사업본부 및 지원부서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하여 부서 별로 1인을 선임하며, 해당 본부 실시책임자가 지정한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본부에 위원이나 실천리더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의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⑦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의원의 소집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⑧ 회의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12 조 자율준수협의회 업무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절차의 개선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및 자율준수관 리자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

3.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및 적절 한 조치

4. 자율준수와 관련한 부서 간의 업무 조정

5.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및 협의사항 처리

제 13 조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자율준수 실천리더의 역할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지원

2. 자율준수 실천리더를 지휘 감독하여 소속 부문 CP운영

3. 소속 부문 CP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이행 및 법 위반 방지

4. 소속 부문 법규 위반 요소 및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② 자율준수 실천리더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2. 소속 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3. 공정거래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 등 공정거래 관련 주요사항의 소속 부문 전파

4. 소속 부문 CP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점검결과를 CP 주관부서에 통보

5. 소속 부문 법규 위반 리스크 및 CP운영 개선사항 발굴

6. 소속 부문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생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에 통보

제 14 조 부서별 실시 책임자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각 부서의 장을 부서별 실시책임자로 임명한다.

② 실시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1. 부서별 CP 실시 상황 자율점검

가. 소속부서의 CP 기준・절차 이행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나. 소속부서의 CP 활동 목표 수립 및 그 달성수준(효과성) 점검

다. 소속부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및 활용상태 점검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사항 부서 내 전파

3.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실천 의지,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 사전검토・협의 프로세스, 내부고발절차, 해당 연도 CP 실시계획 등의 소속부서원에 대한 주지

③ 실시책임자는 제2항 제1호의 자율점검 결과를 CP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 6 절 업무집행의 독립성 보장

제 15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및 자율준수 실천리더, 부서별 실시 책임자 및 담당자, CP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본 운영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절 임직원

제 16 조 임직원의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법령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지침 및 공정거래 자율 준수편람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CP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 1 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 17 조 선언 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제 18 조 선언 방법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지한다.

제 2 절 CP실시 계획

제 19 조 CP 실시계획

① 주관부서는 매년도 초에 CP 실시계획을 입안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거치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를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주관부서는 승인된 CP 실시계획을 실시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③ 실시책임자는 수령한 CP 실시계획을 소속부서의 구성원에게 전파한다.

④ 주관부서 및 실시책임자는 CP 실시계획의 실시상황을 점검하여 차년도 CP실시계획의 입안에 적절히 반영한다.

제 3 절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 20 조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기반이 되는 법령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파악된 법령을 기반으로 공정거래 위험성을 식별 및 분석하고, 위험성의 정도를 평가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응한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그 효과성 측정 기준을 마련한다.

④ 부서별 실시책임자는 본 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CP 활동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수준 및 성과(효과성)를 평가하여 기록한다.

⑤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는 관련 법령의 변동, 회사의 구조 또는 중대한 변경 등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제 4 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 21 조 자율준수편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특히,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알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작성하여 야 하며, 주기적으로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제 5 절 교육 프로그램

제 22 조 교육의 실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계획을 품의하고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교육결과 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교육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교육계획 수립(다음 각 목의 내용 포함)

가. 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사선정기준 마련

나.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관리방안 및 보수교육, 법령 위반자 특별교육

2. 교육대상자 통보

CP 주관부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종류에 따라 직무, 직급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소속 부서에 통보한다. 이 때, 구매, 판매, 영업, 계약부서 등 공정거래 리스크가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된 대상자의 참석을 확인하고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한다.

4. 교육진행

교육진행은 CP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전사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다.

5. 교육결과보고

CP 주관부서는 교육종료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 조사 실시결과를 포함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6. 교육문서 보관

교육자료, 출석점검표, 교육결과보고서 등 교육관련 문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보관 및 관리한다.

④ 교육결과보고서는 교육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포함하 여 작성한다

제 23 조 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CP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제 24 조 교육의 권리와 의무

①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 CP 주관부서에 교육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임직원들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6 절 부서별 자율점검

제 25 조 부서별 자율점검

① 실시책임자는 소속 부서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시 편람 및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CP 기준・절차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임직원은 자율점검 결과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주관부서 등을 통해 위반 여부 검토 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실시 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전담 부서에 보고한다.

1. 소속부서의 CP 기준・절차 이행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2. 소속부서의 CP 활동목표 이행 여부 또는 달성 수준

3. 소속부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및 활용 실적

제 7 절 사전 검토・협의 제도

제 26 조 사전 검토・협의 제도

① 공정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공정거래 이슈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거나 불분명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에 앞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 등을 통한 사전 검토·협의 절차를 거친 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전 검토・협의는 서면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 확인도 병행할 수 있다.

제 8 절 모니터링 제도

제 27 조 CP 모니터링

① CP 주관부서는 반기 1회 이상 CP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CP 관련 점검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② 수감 부서는 주관부서의 CP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CP 모니터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컴플라이언스 관련(법무, 회계, 감사, 윤리, 공정거래, 준법 감시 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원

2.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적격성 판단을 받은 인원

3. 외부 감사 및 평가 기관

제 28 조 CP 모니터링 내용 및 실시 책임

① CP 모니터링은 다음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실시된다.

1. 회사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직무행위의 CP 기준・절차 위반 여부 점검

2. 회사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직무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 점검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CP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모니터링 담당 인원 구성

2.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실태 점검 및 조사

3.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그 결과의 이사회 보고

4.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③ CP 주관부서의 CP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시행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3.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④ 수감부서의 CP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 활동 협조

2.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

3.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CP주관부서 보고

⑤ 본 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CP 모니터링의 세부 진행 및 절차에 관하여는 회사의 감사 관련 내규를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9 절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제 29 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사 및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제보자의 익명성, 비밀성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내부제보자가 내부제보 한 것을 이유로 근무 및 직장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해고 등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법령의 위반에 대한 내부제보 창구 업무는 감사위원회지원조직에서 담당한다.

⑤ 감사위원회지원조직은 내부 제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법령의 위반행위의 조사결과와 대응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사회에 보고한다.

⑦ 내부 제보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감사 관련 규정들에 따른다.

제 10 절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 30 조 제재의 원칙

①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본 운영기준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위원회 회부

가.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도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경우

나.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써 회사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높아 향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할 것을 예상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마.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의 또는 경고

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나.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다. 모니터링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서에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또는 경고

가. 각호의 위반행위가 임원 또는 담당 팀장 주관하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내부제보가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2. 법 위반 방지 교육

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으나 위반할 우려가 높아 자율 준수관리자가 자체 특별교육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으로 제재조치에 추가 하여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제 32 조 제재의 절차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자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준을 정하고 제재조치결과를 자율 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경영여건 및 법규·정책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11 절 CP 운영의 성과 평가 및 개선

제 33 조 CP 의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효과성(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1. 제20조 제4항에 따라 수립된 부서별 CP 활동 목표의 달성수준 및 이를 통해 법령 위반 리스크 경감에 기여한 정도

2.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인식도)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연1회 이상 CP 운영의 성과(효과성)을 평가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항의 평가 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CP의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성과(효과성) 평가를 위해 인식도 조사, 직접 관찰, 공식 인터뷰, 설문 조사(피드백)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4 조 CP의 개선

①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는 제33조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CP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개선 및 변경결정에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경영자의 CP 실천의지 표명의 지속성 및 효과성

2. CP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

3.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책의 효과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그 논의 내용, 결정 등을 문서로 기록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차년도 CP 실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

제 12 절 문서관리

제 35 조 문서관리 기본원칙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③ 자율준수활동에 관한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36 조 관리대상 문서

주요 관리 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2.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면문서

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 입증문서

4. CP모니터링 등 내부 감독활동 관련 문서

5.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6. 자율준수 교육 결과보고서

7.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중 주요자료 등

제 13 절 기타

제 37 조 인센티브 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내부제보자

2. CP 운영 및 참여 우수조직

3. 자율준수협의회 우수 위원 및 자율준수 실천리더

4. 교육이수 우수자

5. 실시 책임자

6. 주관부서 직원

7. CP 추진 성과 우수자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활성화 기여자

8. 기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정한 자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본 조 이외에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8 조 운영상황 공시

공시 관련 부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사회 보고사항 등 운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와 CP주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 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40 조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이행시기

이 규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